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69
----------	-------

제출년월일 : 2020. 05.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비용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안 제8조)
- 나. 선정대리인의 신청·통지 등(안 제9조)
- 다.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안 제10조)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0. 4. 23. ~ 5. 13. (제출된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해당없음
- 3)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 5) 제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0. 5.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선정대리인 신청자에 대한 영 제62조의2제2항 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 대리인 지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 대리인에 대한 적용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선 정대리인 신청자에 대한 영 제6 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 4조에 따른다.</u></p>
<p><u><신 설></u></p>	<p><u>제9조(선정대리인 신청 · 통지 등) ①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 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 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서울특별 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을 선정하 고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 장” 이라 한다)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 할 수 있다.</u></p>

<신 설>

③ 구청장이 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 대리인 지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생략)

제11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1억원 미만 예산의 범위

- 실비변상적 수당 지급으로 건당 15만원(국세청, 서울시 동일)

※ 2019년 이의신청건수 7건

4. 작성자 : 기획재정국 세무1과 차현숙 (☎ 3153-8715)